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진종오 · 이만희
김상훈 · 김재섭 · 권영진
박충권 · 윤한홍 · 김태호
박덕흠 · 서천호 · 유상범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,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. 특히,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유전자 정보,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,

국민의 생명·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
(안 제28조의8제1항, 제28조의8제4항 신설 등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8의 제목 중 “이전”을 “이전 제한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개인정보”를 “민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단서”를 “단서 및 제4항”으로 하고,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이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.

제28조의9제1항제1호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제64조의2제1항제7호 중 “제28조의8제1항”을 “제28조의8제1항·제4항”으로 한다.

제71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의2. 제28조의8제1항·제4항(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한

경우

제75조제2항 제14호 중 “제28조의8제4항”을 “제28조의8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8(개인정보의 국외 <u>이전</u>)	제28조의8(개인정보의 국외 <u>이전</u>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	<u>제한 등</u>) ① -----
를 국외로 제공(조회되는 경우	-----
를 포함한다)·처리위탁·보관	-----
(이하 이 절에서 “이전”이라 한	-----
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	-----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----. -----
당하는 경우에는 <u>개인정보</u> 를	----- <u>민</u>
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.	<u>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</u> ----
	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개인정</u>
	<u>보처리자는 민감정보의 국외</u>
	<u>이전이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</u>
	<u>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</u>
	<u>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</u>
	<u>경우에는 민감정보를 국외로</u>
	<u>이전할 수 있다.</u>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	⑤ -----
호 외의 부분 <u>단서</u> 에 따라 개	----- <u>단서 및 제4항</u> --
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	-----
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	-----

의 다른 규정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(생 략)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의9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)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1. 제28조의8제1항,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

2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제64조의2(과징금의 부과)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

-----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⑦ -----제6항-----

-----.

제28조의9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) ① -----

-----.

1. -----제5항-----
-제6항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64조의2(과징금의 부과) ① ---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7. 제28조의8제1항(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

8. · 9. (생략)

② ~ ⑩ (생략)

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8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제28조의8제1항 · 제4항-----

8. · 9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71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8의2. 제28조의8제1항 · 제4항 (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

9. · 10. (생 략) 제75조(과태료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13. (생 략) 14. 제28조의8제4항(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. ~ 27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<u>함한다)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</u> 9. · 10. (현행과 같음) 제7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제28조의8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15. ~ 27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